

	교수역량개발(단기연수) 규정	문서번호	3-2-26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2. 11. 01.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『교원인사규정』 및 『교원업적평가 운영규정』에 의거한 교수역량개발(단기연수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학회, 임상연수, 세미나 등에 적용한다.

제3조(학회) ① 전공교과에 관련한 학회 참가 시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.

② 학회비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공문, 참가 영수증, 이수증 등을 해당 월내에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4조(임상연수) ① 전공 및 부처별 임상연수비를 3년 단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.

② 임상연수비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공문, 연수비 지급영수증, 이수증 등을 해당 월 내에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5조(세미나) 총장 및 보직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교원의 세미나 참석비를 지원한다.

제6조(기타) 기타 교원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